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2.

발 의 자 : 박성훈 · 임이자 · 박충권
박수영 · 김기웅 · 김승수
송언석 · 곽규택 · 김기현
김성원 · 한지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,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,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,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,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, 산업융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

임(안 제28조의2 신설 등).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,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전기요금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기간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)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, 「상법」 제360조의10제1항,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“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”는 “발행 주식총수의 <u>100분의 20</u>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”로 한다.	제16조(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30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6조의2(특례적용의 요건) <u>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</u> 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 특수관계인(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)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.	제26조의2(특례적용의 요건) <u>제4조제1항제2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